자료 08-09
중소기업 상속 관련 정책토론회

중소기업 상속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2008. 12

한국조세연구원

심포지엄 개요

□ 일　　시　2008년 12월 16일 목요일 14:00～16:30

□ 장　　소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14:00~14:15 **개회사 및 인사말**

▶ 개회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인사말　최홍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 축　사　나성린 국회의원

14:20~16:20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자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발표자　주제발표 1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2 정지선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토론자　백운찬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우명동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조세심판원 심판관)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최수규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가나다순)

16:20~16:3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6:30　　**폐회**

총 목 차

제1부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제2부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신상철(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2008년 12월 16일

신 상철 연구위원

KSBI 중소기업연구원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 상속과세제도

Ⅲ.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Ⅳ. 외국의 가업승계관련 과세제도 동향

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상속과세제도 개선방안

※ 본 자료는 필자가 작성한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중소기업연구원, 2007. 12)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Ⅰ. 문제의 제기

□ 논의의 배경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중소기업

- 우리나라는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 2018년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측
-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

○ 고령화와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

- 사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장 중인 중소기업이 성장을 멈추고, 퇴출될 위험에 노출
- 창업후 장기간에 축적된 기술, 노하우, 경영기법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장될 위험

○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제도 기반에 심도 깊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 기업승계 논의는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 경제의 안정성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운영 중인 기업은 일자리를 5개를 창출하는 반면, 창업기업은 2개를 창출,
- 또한, 사업의 성공률이 승계의 경우가 창업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일반적임(EU)

□ 외국의 사업승계 현실과 동향(EU,2006)

○ EU는 전체기업의 1/3(대부분 가족기업)이 향후 10년 이내에 철수할 것으로 예상

- 이는 매년 69만개의 중소기업과 280만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

○ 유럽 각국 등이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직면하고 있는 기업승계 현황

국가	예측기간	추정 승계기업
독일	향후 5년	354,000개의 기업
프랑스	향후 10년간	600,000개 기업
이탈리아	향후 10년간	전체기업의 40%
오스트리아	2004년~2013년	전체 기업의 23%
영국		중소기업의 1/3
일본		연간 29만개의 폐업기업, 고용상실 20만~35만명

중소기업 경영자의 평균연령 및 고령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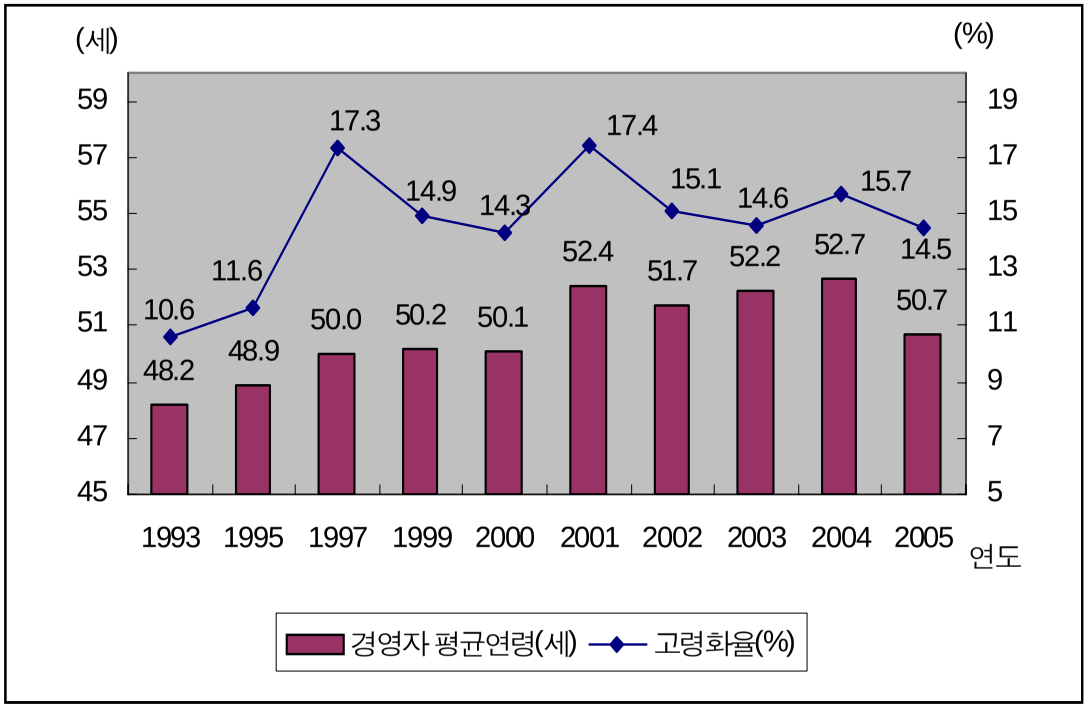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경영자의 평균연령은 1993년 48.2세에서 2004년에는 52.7세로 증가

-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1993년 10.6%에서 2004년에는 15.7%까지 증가
- 특히 소기업(50.4세) 보다 중기업(54.5세)에서 고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짐
- 60세 이상 및 70세 이상 경영자 비율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60세 미만의 경영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

○ 향후 5년~10년 이내에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더욱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업승계의 문제도 더욱 크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됨

상속세율의 변천

'97. 1. 1～'99. 12. 31		2000. 1. 1 이후	
* '97년 이후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구간 및 세율 단일화			
1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 10억원 이하	30%
50억원 이하	40%	· 30억원 이하	40%
50억원 초과	50%	· 30억원 초과	50%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세율

	1992～99년	2000～02년	2003년～
최대주주의 지분 50% 이상일 때	10%	20%	30(15%)
최대주주의 지분 50% 이하	10%	10%	20(10%)

주: ( )은 중소기업에 대한 할증률

□ 상속 · 증여세 과세현황

○ 유산과세형

○ 2000년 이후 상속과세 강화

- 과세구간 및 세율

-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제도 : 경영권을 물려받을 때(최대주주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상속 · 증여받을 때) 일반 상속 · 증여에 비해 최고 30%의 세금을 할증과세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15%의 할증률이 적용되지만, 조세감면특례법에 의해 2009년까지 할증평가 유예중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

구분	한도
① 기초공제	2억원
② 인적공제	5억원~30억원
③ 일괄공제	5억원
④ 가업상속공제	2억원 ~ 30억원

자료: 조세개요(2005)

주 : ①기초공제 + ②인적공제(배우자공제는 제외)와 ③일괄공제 중 선택

□ 상속·증여세법의 가업승계 규정 (개편안 미반영)

○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요건

- 피상속인이 15년이상 지속적으로 사업영위
- 피상속인 사업영위 기간중 80% 이상 대표이사
- 최대주주 상장기업 40%이상, 비상장기업 50% 이상 보유
- 조특법상 중소기업(업종, 규모, 독립성, 졸업기준)에 해당

○ 가업상속 연납제도

- 15년(가업상속재산 50%이상),

  5년(기타) 연부연납기간(일반상속, 3년)

○ 물납제도

-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
- 상속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세무서장의 허가

□ 가업상속 및 물납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뿐 아니라 주식 증여하는 경우 물납을 불허하고 있어 납부 부담이 가중

상속 · 증여세 납부현황

구분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상속/증여세	납부액 (십억원)	948	856	1,315	1,708	1,873	2,389
	납세인원(명)	51,627	56,720	56,161	104,832	64,741	90,500
비중	(상속세+증여세)/국세(%)	0.56	0.89	1.23	1.55	1.56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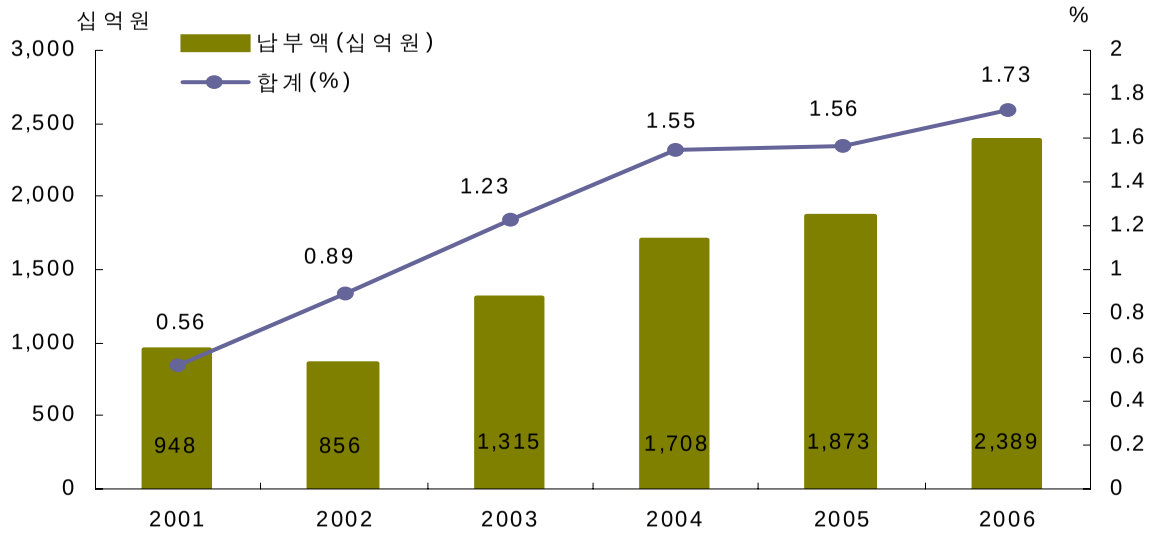

자료 : 국세통계연보

○ 2006년 상속과세 납부 규모는 총 90,500명이 2조3원 이었으며, 총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3% 수준임

○ 2000년 이후 상속과세 강화의 영향으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

- 2001년(0.56%)이후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배 수준으로 (2006, 1.73%) 증가

- 총세수입대비 상속과세세수는 OECD 평균보다 3배정도 수준임 (OECD 평균 0.44%, 한국 1.20% Gale&Slemrod, 2001)

□ OECD 국가의 상속 · 증여세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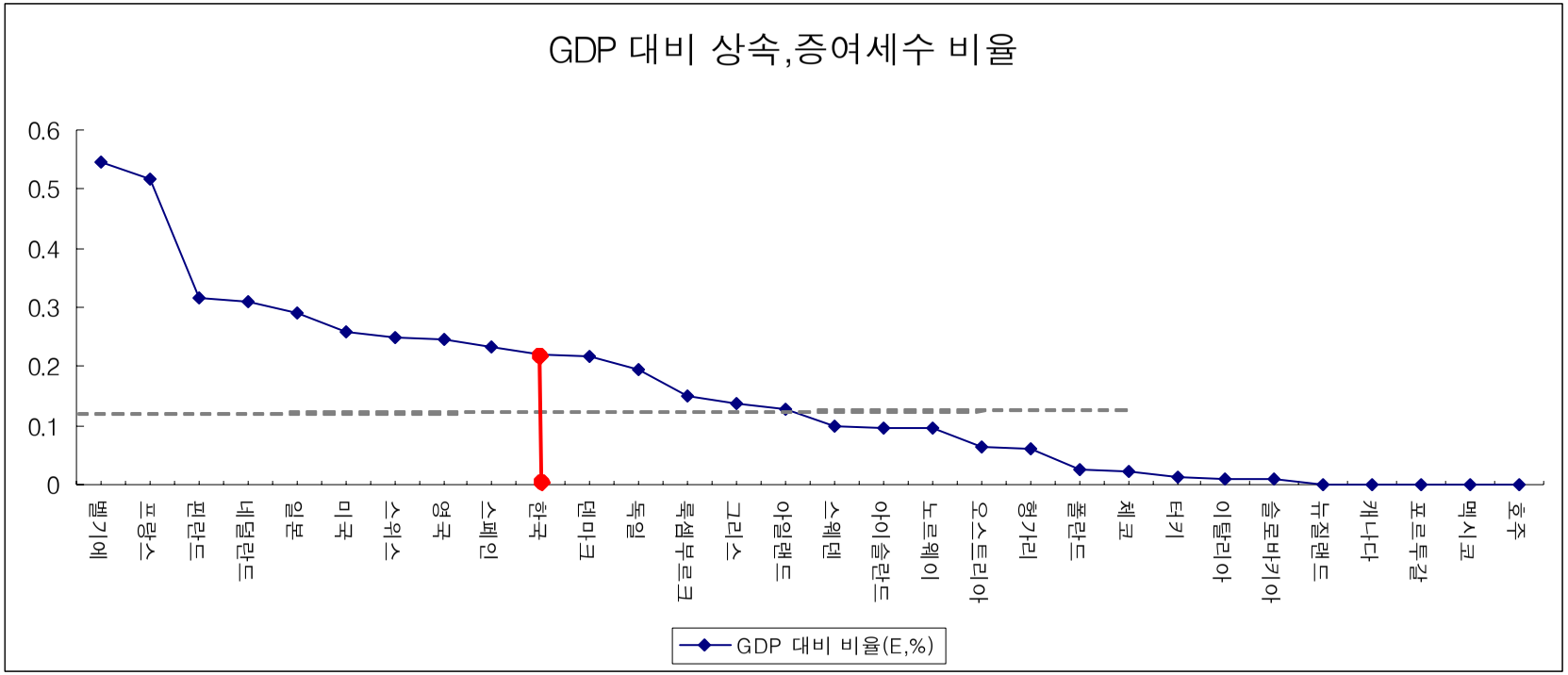

자료 : REVENUE STATISTICS 1965 - 2005 (2006, OECD)

○ **OECD국가들의 GDP 대비 상속 · 증여세수 비율은 0.128%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DP 대비 상속 · 증여세수 비율이 0.22%로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함**

□ 조사대상 중소법인 추출

①	KIS-FAS 중소법인		69,243
②	대표자 정보 누락	(32,080)	37,163
③	업력 30년 이상	2005년 12월 31일 기준	844
④	업력 20년 & CEO 55세 이상	2005년 12월 31일 기준	1,486
⑤	조사대상업체	③+④에서 중복업체 제외	1,879

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주)

<가업승계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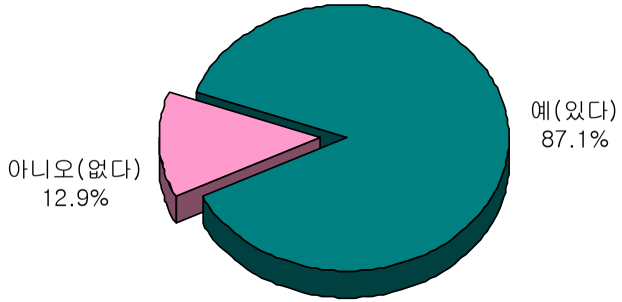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 현재 가업승계 관련 제도가 원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87.1%가 가업승계 의향을 보임

○ CEO 유형별로 창업자(94%), 희망은퇴 연령별로 66세 이상에서 가업승계 의향이 높게 나타남

○ 높은 가업승계 의향은 가부장적 유교문화와 불완전한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친족에 의한 가업승계 선호를 반영하고 있음

<가업승계 진행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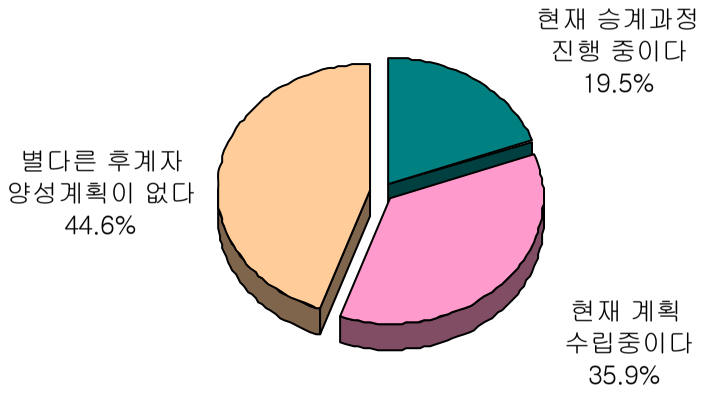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 현재 후계자 승계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19.5%는 현재 승계과정 진행 중, 44.6%는 별다른 후계자 양성계획이 없다고 응답함

○ 승계를 앞둔 승계예비자의 80%가 적절한 계획이 없어 앞으로 승계관련 기업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가업승계의 주된 장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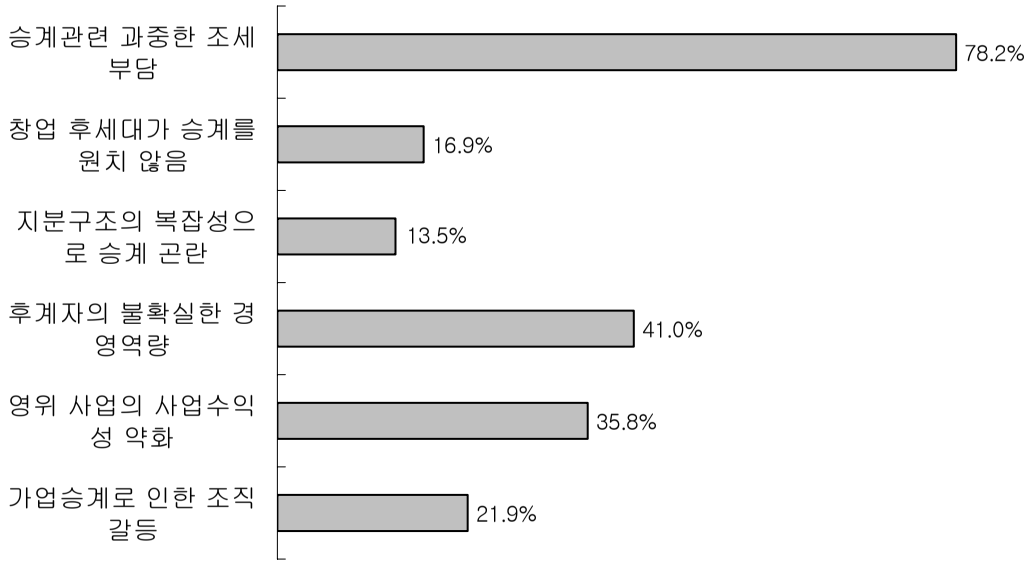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 가업승계의 주된 장애 요인으로 응답자의 78.2%가 승계관련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적

○ 다음으로 후계자의 불확실한 경영역량(41%), 영위 사업 사업수익성 약화(35.8%)을 들고 있음

○ 상속과세가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함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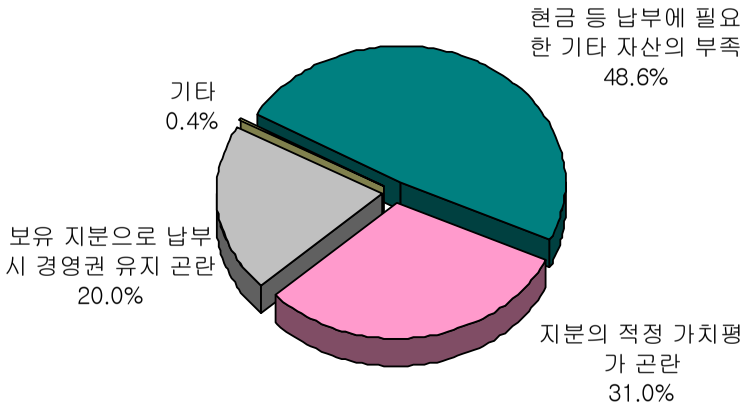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 현금 등 납부에 필요한 기타 자산의 부족이 가업승계 시 부과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임(48.6%)

○ 사업자의 재산 대부분이 사업자산을 형성하고 있어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낮으며(rich assets poor cash), 세금 납부를 위하여 지분을 매각하거나 부채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발생

□ 상속세액 추정

○ 해당 법인이 상속세를 납부후 폐업하는 경우와 세감면 존속후 법인세 및 갑근세 세수를 비교

(단위 : 억원)

상장유형	기업수	평균 지분율	상속세	누적 법인세			누적 갑근세		
				5년	10년	15년	5년	10년	15년
전체	1,511	48.0	4,897	**4,356**	9,855	16,796	**2,033**	4,684	8,140
비상장기업	1,282	51.9	3,769	**2,830**	6,404	10,915	**1,499**	3,455	6,003
상장·등록기업	229	26.8	1,127	**1,525**	3,450	5,881	**533**	1,229	2,137

○ 상속세가 사업관련 유동성 또는 자산으로부터 납부되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한다면, 장기세수 손실 가능성을 감안할 때 상속세를 통한 단기세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상속재산 평가방법

○ 거래소·코스닥상장법인 : 평가일(2006.12.31) 전후 4개월 종가평균

○ 비상장법인 : 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원용

□ 추정 상속세액의 국제 비교

○ 설문조사에 사용한 기업중 표준기업을 선정하여 주요국의 상속과세 규모와 비교
- 자산 : 320억, 부채 : 220억, 최대주주지분율 : 50% 인 외감기업

○ 한국 표준기업의 납부 예상되는 상속세액이 독일의 약 3배, 프랑스의 약 4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국에 비하여 상속세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만원)

국가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추정 상속세액	19억 6,695	6억4,431	4억5,162	17억3,549

- 비교국의 상속재산가치는 우리나라와 같다고 가정
- 환산 환율은 사례기업 추정 시점에 맞추어 2006년 12월 평균 환율을 적용

1.1.1.1.1. □ EU 소속 국가 및 경쟁 상대국들은 승계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승계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기업의 영속성 제고를 도모

1.1.1.1.2.

○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있음

- 상속·증여세 폐지국가 :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시프러스,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홍콩, 싱가포르(폐지예정)

- 기업의 사업지속에 따른 상속·증여세 감면국가 : 스페인,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 현재 21개 국가에서 사업승계에 관하여 상속세를 폐지하였거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 중이며, 18개 국가에서는 사업용 재산의 누출을 막기 위한 과세이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주요국의 가업승계 조세제도 개요 ('08 개편안 미반영)

국가	공제 및 감면제도	할인평가	세율, 가산율 및 분납	기타
한국	○일괄공제 5억 ○가업상속공제〔2억원 또는 상속재산의 20%(30억한도)〕	○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 (중소기업 2009년까지 유예)	○ 3년(2년) 거치후 12년(5년)간	○ 주식 사전상속(5억원 공제후, 10% 과세후 상속시 정산)
독일	○ 10만 유로까지는 완전비과세 ○ 사업의 지속 등 요건충족 시 256,000유로 공제	○ 상속지분 특별공제 및 남은 가액에 대한 40% 할인평가	○ '생산적 자산'에 대하여 납부유예 및 매년 1/10씩 상속세 감면 법안 제출중	
일본	○ 특정 사업용 토지 80% 감면	○ 중소기업 자사주 상속가액 10% 할인평가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20년간 분납	○ 상속시 과세정산제도 ○ 최근 비상장 동족기업에 대하여 80% 할인평가 추진 중
미국	○ 사업용 자산에 대해 130만$까지 비과세 - 2002년부터 공제액을 확대하고,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 법원은 20~33% 내에서 minority 할인평가 인정	○ 2010년부터 증여세최고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예정	○ 2010년까지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인하
프랑스	○ 자녀인적공제 5만 유로	○ 2005년부터 사업용 자산 75% 할인평가	○ 5년 또는 10년간 매 6개월에 1/20씩 분납	

1.1.1.1.3. □ 일본의 사업승계 관련 최근 입법 동향

○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2008. 5 통과(2008. 10. 01 시행)

○ 상속세 과세에 대한 향후 개정 조치

- 정부가 2008 회계연도 기간 중에 상속세 과세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취지를 규정
  ·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납세유예 제도를 신설하여 2009 회계연도 정기국회에 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

□ 참고 - 사업승계 관련 세제 개정 추진 내용

○ 상속세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등의 상속세에 대해서는 현행 10% 경감에서 80% 납세유예로 대폭 확대(고용유지를 비롯한 5년간의 사업 계속이 요건)

○ 2009 회계연도 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일(2008년 10월 1일 예정) 이후 상속에 대하여 소급 적용

	현 행	개 정 후
제도	자사주식과 관계된 10% 감액 조치	자사주식과 관련되는 80% 납세 유예
주요요건	○ 발행 주식총액 20억엔미만 회사 ○ 최대 경감폭 상속된 주식 가운데, 발행된 주식 총수의 2/3 또는 최고 평가액 10억엔중 적은 금액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주식총액요건은 철폐 ○ 경감대상 주식의 한도액 철폐 ※ 단 발행된 의결권 주식 총수의 2/3 이하 유지

자료 :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關する法律案(概要)

1.1.1.1.4. □ 독일의 사업승계 관련 최근 입법 동향

○ 2006. 10. 25 사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법률안 의회 상정

○ 2007. 01. 31 「헌법재판소」에서 상속세법 일부조항(사업용재산과 비사업용재산의 평가방법의 상이)에 대한 위헌 결정 및 관련 법 개정 촉구

○ 2008. 01. 04 상속세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원 제출

○ 2008. 12. 05 연방하원(Bundestag)에 이어 연방상원(Bundesrat) 상속세법 개정안 의결(2009.1시행)

1.1.1.1.5. □ 개정안의 주요 골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100% 면제

- 상속후 해당기업을 10년간 경영하며 종업원수를 100% 유지
- 7년동안 93%를 유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85%를 경감
- 다만, 상속세를 100% 면제받기 위해서는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 「간접적 업무용 자산」의 비중이 전체 자산의 10%를 초과하기 않아야 하며, 납부세액의 85%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간접적 업무용 자산」의 비중이 전체 자산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1.1.1.1.6. □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조세 정책 방향

○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승계 친화적인 조세체계의 구축

1.1.1.1.6.1.1. - 상속과세가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1.1.1.1.6.1.2. - 조세제도가 승계의 저해요인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세금 납부를 위해서 부채가 발생하거나 사업을 매각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됨

1.1.1.1.6.1.3. - 특히, 자본시장에 연계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과도한 상속과세로 투자위축이나 자금경색 위험이 있음

1.1.1.1.6.1.4.

○ 제도의 개선을 통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

1.1.1.1.6.1.5. - 상속과세 조세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에 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1.1.1.1.6.1.6. - 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서 승계과정은 창업, 성장 이후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주요한 단계

-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가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편법 상속의 유인을 줄여주는 환경을 구축

1.1.1.1.7.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결 주요내용 >

1.1.1.1.8. □ 기본방향

○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부담 완화에 초점

1.1.1.1.8.1.1. -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국부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

1.1.1.1.8.1.2. - 소득세율에 맞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최고세율을 33%('10년)로 인하)**는 잠정보류**

1.1.1.1.9. □ 중소기업 가업상속 관련 개편 주요 내용

○ 가업상속 공제율 확대 : 상속가액의 20% → 40%

○ 가업상속 공제한도 확대 :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1.1.1.1.9.1.1. -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 가업상속 적용요건 완화

1.1.1.1.9.1.2. - 피상속인의 사업 영위기간 : 15년 → 10년

1.1.1.1.9.1.3. - 상속인 대표이사 취임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내(6월) → 2년 6월내

1.1.1.1.10.<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결 검토의견 >

1.1.1.1.11.○ 의결 내용은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최대 100억), 대상조건 완화, 사후관리 요건 현실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음

1.1.1.1.12.○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어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 할 수 있음

1.1.1.1.13.○ 의결 내용은 종전에 비하여 상속·증여세 경감 효과가 상당하여 소규모 기업의 경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승계 측면에서 보면 상속·증여세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1.1.1.1.14.□ 여러 세대에 걸친 승계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용 자산이 기업 외로 유출되지 않고 최대한 사업용 자산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1.1.1.1.15.<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 도입 검토 >

1.1.1.1.16. □ 중소기업 상속재산 할인평가제도

○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과세표준 계산시 할인평가제도 도입

○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이 기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 구축

○ 특히,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상속 지분 평가시 80%를 감면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 중

1.1.1.1.16.1.1.

1.1.1.1.17. □ 가업승계 성과에 따른 상속과세 감면제도

○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일정 조건의 가업승계기업에 대하여 상속과세의 점진적 감면

○ 독일의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 특례 : 입법 완료

1.1.1.1.17.1.1.

감사합니다.

1.1.1.1.18. □ 상속과세 찬성 논거

○ 첫째, 상속과세는 불평등을 해소(두 가지 가정)

- 진보적 철학에 의하면 높은 상속세율은 '선'이다

  현실 : 상속과세는 소비를 선호하게 되고 근로의욕과 저축성향을 떨어뜨림

- 높은 상속세율은 실제적으로 불평등을 떨어뜨린다

  현실 : 상속세가 실제로 불평등을 떨어뜨린다는 어떠한 실증적 증거도 없으며, 불평등의 약 2%만이 상속된 부의 불평등한 배분에 기인함(Blinder,1974)

○ 둘째, 상속과세는 기부 활동을 강화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부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실효성 미흡

○ 셋째, 국세의 1.5%에 해당하는 세수 확보

- 상속세가 사업관련 유동성 또는 자산으로부터 납부되어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한다면,
- 국가의 단기조세 수입은 사업의 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장기 조세수입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1.1.1.1.19. * The Economics of the Estate Tax : An update, Joint Economic Committee US Congress, 2003 요약 정리

1.1.1.1.20. □ 상속과세 반대 논거

○ 상속과세는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을 저해

- 상속과세는 과세순응을 위하여 높은 과세순응비용을 발생시키고,
- 또한 상속 계획과 실행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발생
- 미국의 2003년 상속과세 순응비용($22bil)은 납부된 규모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US. JEC, 2003)
- 상속세는 자본축적에 대한 과세이므로 저축과 투자 활동을 위축시킴
- 투자에 대한 최종 수익률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상속세는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을 위축시켜 자본성장 속도를 떨어뜨림
- 미국의 상속과세는 자본축적을 3.2% 떨어뜨렸다고 추정(US. JEC, 1998)
- 상속세는 사적소유의 자산을 청산하게 하여 자산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 통제로 이전

※ 상속과세 찬반 논의

○ 가족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창업자정신을 위축

- 위험선호자들은 소득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활용을 선호
- 하지만 상속과세는 신기술 사업진출을 억제하고 가족기업을 파괴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혁신을 억제
- 사업승계후 사업실패를 묻는 질문에 98%의 상속인이 조세납부를 위하여 자금조달이 필요하였다고 응답 (Prince and Karen, 1995)
- 상속세가 사업관련 유동성 또는 자산으로부터 납부된다면, 국가의 단기조세 수입은 사업의 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장기 조세수입을 하회할 수 있음

○ 좋은 조세 정책에 위배

- 평등성(equity), 단순성(simplicity), 효율성(efficiency)
- 효율적 조세 제도 효율적 조세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납부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평등성 : 조세부담이 부에 기초한 담세역량보다는 절세 기법에 의존
- 자원의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 2002년 상속과세는 27bil달러, 경제전체에 발생하는 실제 비용은 54bil달러로 추정(US. JEC, 2003)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임주영(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정지선(건양대 세무학과 교수)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Ⅰ. 서론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제도는 1950년부터 두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재정수입의 확보보다는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1].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목적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으며,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보완세로 보아서 상속세보다 실질적으로 더 중과세를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적인 구조는 상속세보다 증여세를 더 중과세함으로써 생전증여를 억제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에 따라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상속세와 증여세의 강화를 통하여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수입은 내국세의 약 2% 내외로 타 세목에 비하여 매우 낮으며, 지나치게 세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조세회피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아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도한 부담은 장기적으로는 저축을 감소시키고 투자재원의 축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자본의 자유화에 편승하여 국부가 국외로 유출되며, 심지어 부를 많이 소유한 계층은 국적을 상속과세가 없거나 낮은 나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세법의 정확하고 공평한 집행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실제 상속세의 부담률이 사안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사회적인 신뢰와 통합에 오히려 부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상대적 비중은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현저히 높은데, 이는 상속과세의 내용 또는 제도의 변화추이 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최근 많은 선진국들이 상속과세를 폐지하거나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속과세에 있어서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등을 통하여 상속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을 추구하여 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세를 통하여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현 시점에서라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소비와 투자의 감소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와 재정에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여건의 변화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이다. 즉,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현재의

1)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8, p.1048.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구조하에서는 자산의 이전이 그만큼 늦어지게 되어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이 경기의 침체와 고령화 사회에서는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는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합리적인 정착방안과 기존의 창업자금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특례제도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상속시 정산과세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제도 중에서 상속세의 과세체계, 증여공제, 사업상속공제 및 세율구조 등의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내용 및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산과세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두고 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 의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자금중소기업이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1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2].

나. 중소기업과 재산의 범위

(1)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이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1항.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2) 과세특례 적용제외 대상 재산의 범위

과세특례 적용제외 대상 재산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의미한다[3]. 즉, 다음의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①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된 시설물이용권

㉢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다.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4].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의 설립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5.
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2항.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5)]

라. 사용기간 및 창업자금사용내역서의 제출

(1) 사용기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6)].

(2) 창업자금사용내역서의 제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7)]에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한다[8)].

마.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9)].

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③ 새로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④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 등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
⑤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 등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2항).
6)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4항.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4항).
8)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5항.
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6항.

바.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세액공제 등

(1)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창업자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10]. 한편, 창업자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11].

(2) 세액공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12].

사. 특례신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3].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 의의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에서는 주식 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14]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15].

---

1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7항.
1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8항.
1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9항.
1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11항.
1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

나. 증여세의 과세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16]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17].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여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여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설비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준용규정 등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 등으로 본다[18].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제41조의 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해당 주식의 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

한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

16) 정당한 사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3항).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7)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5항 및 제6항.

18)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3항.

1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4항.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

2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5항.

2. 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내용

1)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도입배경

일본 세제조사회는 종전에는 증여세의 부담 경감에 의한 세대간의 재산이전의 촉진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 이에 대하여 노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조기에 이전함으로써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증여세를 경감하자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 이미 상당한 금액의 증여를 매년 비과세하고 있으며,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상속세의 과세대상자 중에서 극히 일부의 자산가에 한정하여 증여세의 경감을 통하여 세대간 재산의 이전을 촉진하는 효과 또한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세제조사회는 종전에는 증여세의 부담 경감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였다[21].

그러나, 2002년 6월 일본의 세제조사회에서 발표한 “당연한 세제구축을 향한 기본방침”에서는 상속세법을 제정한 1950년대와 현재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자본화의 지속적인 발전에 의해서 향후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경제적인 기반을 형성한다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희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상속세보다 중과세함으로써 세제가 생전증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세대로의 재산이전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산의 이전을 보다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경제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03년 세제 개편에 있어서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22].

2) 상속세법상 상속시 정산과세의 체계

가. 상속시 정산과세의 선택과 신청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증여를 한 자의 직계비속인 추정상속인이어야 하며, 증여를 받은 자가 그 해 1월 1일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증여를 한 자는 증여를 하는 때에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상속시 정산과세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여자를 특정증여자라고 한다[23]. 다만, 그 해 중도에 그 자의 양자로 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추정상속인(배우자를 제외한다)으로 된 경우에는 추정상속인으로 된 때의 그 이전 증여는 위 첫 번째 적용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부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를 대습하여 조부의 추정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한 손자의 경우도 추정상속인이 될 수 있다.

---

21) 橋本 守次, 『相續稅法』, 大藏財務協會, 2007, p.667.

22) 日本公認会計士協会, 「相続・贈与に係る税制について―相続税と贈与税の一体化の方向性について」, 『租税調査会研究報告』第13号, 2004,12.6, p.5.

23) 日本 相續稅法 第21條の9 第5項.

한편, 상속시 정산과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해의 다음 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그 해에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이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타 시행규칙[24]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5]. 그리고 그 신청서에 의하여 증여를 한 자(특정증여자)로부터 그 후 증여를 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해분 이후 상속시 정산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한다. 한편,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자들이 상속시 정산과세선택선고서에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자는 당해 신청서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상속시 정산과세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가격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자가 상속시 정산과세의 요건을 충족한 특정증여자로부터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특정증여자별로 당해 연도에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격으로 한다[26]. 즉, 특정증여자마다 증여세의 과세가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특정증여자가 2명인 경우에는 상속시 정산과세와 관련된 증여세의 과세가격도 2개가 되는 것이다.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가 그 해에 특정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에 관한 한 그 해의 증여세에 대하여 특정증여자별로 증여세의 과세가격에서 각각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27].

① 2,500만엔. 다만, 이미 이 조항의 규정 적용을 받아 공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② 특정증여자별로의 증여세의 과세가격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시 정산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2007년도 세제 개정에서 첫째, 발행주식 등의 총액이 20억엔 미만일 것, 둘째, 수증자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 등의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또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것, 그리고 그 수증자가 그 회사의 대표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종사하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의 증여에 대하여도 인정되는 것으로 하고, 또한 비과세의 범위를 올려 3,000만엔으로 하였다.

다. 상속시 정산과세에 관한 증여세의 세율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가 그 해에 특정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에 관한 그 해분의 증여세의 금액은 특정증여자별로 계산된 증여세의 과세가격에 각각 2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8].

라. 상속시정산과세에 관한 상속세의 계산

24) 日本 相續稅法施行規則 第10條 및 同法行規則 第11條.
25) 日本 相續稅法 第21條の9 第2項.
26) 日本 相續稅法 第21條の10.
27) 日本 相續稅法 第21條の12 第1項.
28) 日本 相續稅法 第21條の13.

종래의 상속세는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의 납세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의해서 상속개시 전에 증여에 의해 모든 재산을 취득하게 되어 상속시점에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한 재산취득이 없는 상속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즉,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부연하면, 특정증여자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 및 당해 특정증여자와 관련된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의 상속세의 계산에 대해서는,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선택한 연도분 이후의 해의 당해 특정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의 증여할 때에 있어서의 가액과 상속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가액(상속시 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당시의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상속세의 상속가액으로 하여, 종전의 과세방식에 의해서 계산한 상속가액으로부터,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있어서의 증여세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다[29].

마. 상속시 정산과세에 관한 상속세의 납부의무 승계 등

(1) 상속시 정산과세적용자가 특정증여자보다도 먼저 사망한 경우

특정증여자의 사망 이전에 당해 특정증여자에 관한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자의 상속인(포괄수유자 포함)은 그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에게 적용되던 납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상속인 중에서 특정증여자가 있는 경우에 그 특정증여자는 납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30].
이 경우에 상속시 정산과세적용자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상속인 가운데에 특정증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여자를 제외)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실제 유산분할과 관계없이 민법 제900조부터 제902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상속분(상속인 가운데 특정증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여자가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분을 계산한다)에 의해 안분한 금액이 된다[31]. 그리고,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의 상속인이 특정증여자보다도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상속인 가운데 특정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여자를 제외)에 대한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가 있는 경우 상속시 정산과제도 적용과 관련된 권리 또는 의무는 재승계된다[32]. 또한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는 그 상속인은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상속시 정산과세적용자에게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포함)을 한도로 하여 그 납세와 관련된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33].

(2)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가 '상속시 정산과세 선택신고서'의 제출 전에 사망한 경우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가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수증자가 '상속시 정산과세 선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수증자의 상

29) 橋本 守次, 『相續稅法』, 大藏財務協會, 2007, p.675.
30) 日本 相續稅法 第21條の17 第1項.
31) 日本 相續稅法 第21條の17 第3項.
32) 日本 相續稅法 第21條の17 第4項.
33) 日本 相續稅法 第21條の17 第2項.

속인(포괄수증자를 포함하며, 상속인에 특정증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여자를 제외)는 그 상속개시를 안 날의 다음날부터 10월 이내에 '상속시 정산과세 선택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34]. 또한 그 신고서를 제출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받아야 할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납세와 관련된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35].

3) 조세특별조치법상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가. 특정증여자로부터 주택취득 등 자금을 받은 경우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는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의 종류 또는 수량 등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자금의 경우에도 당연히 대상이 된다. 그러나, 상속세 정산과세제도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연령이 증여하는 연도의 1월 1일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수증자의 경우도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고령화의 진전에 수반하여 상속인으로 인한 다음세대로의 재산이전 시기 지연의 대처라고 하는 일체화의 취지가 있다. 한편,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을 보면, 현재 자기의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들은 30대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부모는 대개 60세를 전후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현행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있어서의 요건 중에서 증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취득자금의 특례제도는 증여자의 연령요건을 완화하여, 주택의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정된 제도이다[36]. 구체적으로는 증여를 한 해의 1월 1일에 65세 미만의 자로부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특정수증자를 말한다[37]. 즉, 무제한 납세의무자가 주택취득 등의 자금의 증여를 한 자의 직계비속인 추정상속인으로서 당해 자금의 증여를 받은 해의 1월 1일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나. 특정동족주식 등의 증여를 받는 경우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0세 이상인 자녀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부모로부터 '특정동족주식 등[38]'의 증여(그 특정동족주식 등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500만엔 이상인 경우의 증여에 한한다)를 받아 그 해 12월 31일에 그 특정동족주식 등과 관련된 법인의 임원 등의 지위를 가지 경우, 확인일의 다음날부터 2월 이내에 확인서[39]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는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때는 그 특정동족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시 정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4) 상속시 정산과세의 이용현황

---

34) 日本 相續稅法 第21條の18 第1項.
35) 日本 相續稅法 第21條の18 第2項.
36) 橋本 守次, 『相續稅法』, 大藏財務協會, 2007, p.685.
37) 日本 租稅特別措置法 第70條の3.
38) '특정동족주식등'이란 동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말한다.
39) '확인서'란 확인일에 자식이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 직전에 법인의 대표자이며, 총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총출자액의 50%를 초과의 요건을 만족하고 또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이 아닌 것을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제한업국장이 확인을 한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상속시 정산과세는 생전증여에 의해 고령자로부터 젊은 층으로의 재산이전과 소비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2003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이한 증여세의 과세현황 추이와 상속시 정산과세의 과세현황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최근 5년간의 증여세 과세현황

상속시 정산과세가 도입되기 전 2002년과 도입된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의 증여세의 과세현황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신고인원을 보면 2002년도에 360,564명에서 상속시 정산과세의 시행 첫해인 2003년에는 403,245명으로 11%가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403,831명으로 12%, 2005년에는 405,276명으로 무려 24%나 증가하였다가 2006년에는 369,667명으로 2%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취득재산가액을 보면 2002년도에는 1,267,859백만엔에서 2003년도에는 2,308,001백만엔으로 무려 82%가 증가를 하였으며, 2004년도와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80% 이상의 증가가 있었으나 2006년도에는 그 증가추세가 약간 주춤하여 60%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증여세의 변화추이는 상속시 정산과세를 도입하면서 납세자들이 지금까지 증여세의 부담으로 생전증여를 망설이다가 적극적으로 생전증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2-1> 최근 5년간의 증여세 과세현황의 추이

(단위; 명, 백만엔, %)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신고인원	360,564 (1.00)	403,245 (1.11)	403,831 (1.12)	405,276 (1.24)	369,667 (1.02)
취득재산가액	1,267,859 (1.00)	2,308,001 (1.82)	2,312,016 (1.82)	2,376,937 (1.87)	2,029,148 (1.60)
납부세액	68,822 (1.00)	87,467 (1.27)	96,884 (1.40)	115,652 (1.68)	118,075 (1.71)

주: ( ) 안은 비율임.
자료: 日本 国税庁, 『統計年報』, 각 연도

나. 상속시 정산과세의 과세현황

아래의 <표 2-2>는 상속시 정산과세제도가 도입된 후 최근 4년간의 과세현황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증여세 신고인원 평균 397,534명 가운데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이용하는 신고인원은 평균 81,759명으로 그 비율은 21% 정도이며, 재산취득가액은 총 재산취득가액 평균 2,256,525백만엔 가운데 상속시 정산과세로 인한 취득분이 평균 1,168,830백만엔으로 그 비율은 52%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총 증여세 신고인원은 평균 397,534명으로 그 가운데 익년분과세 신고인원은 평균 315,775명, 비율은 79%로서 상

속시 정산과세제도 신고인원 평균 81,759명, 비율 22%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신고인원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재산취득가액은 상속시 정산과세분의 취득가액이 평균 52%로 익년과세분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즉, 총 증여세 재산취득가액 평균 2,256,525백만엔 가운데 익년과세분은 평균 1,087,695백만엔으로 그 비율은 48%에 그친 반면에 상속시 정산과세분은 평균 1,168,830백만엔으로 비율이 52%를 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은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이용하여 그 재산을 적극적으로 이전을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상속시 정산과세의 도입목적과 부합하여 그 정책적 실효성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2> 상속시정산과세 도입 후 최근 4년간의 과세현황 추이

(단위; 명, 백만엔, %)

	신고인원			취득재산가액		
	익년과세분	상속시 정산과세분	계	익년과세분	상속시 정산과세분	계
2003	327,072 (0.80)	78,254 (0.20)	405,326 (1.00)	1,145,881 (0.50)	1,162,120 (0.50)	2,308,001 (1.00)
2004	322,231 (0.79)	83,755 (0.21)	405,986 (1.00)	1,108,083 (0.47)	1,203,932 (0.53)	2,312,015 (1.00)
2005	325,841 (0.80)	81,700 (0.20)	407,541 (1.00)	1,154,643 (0.48)	1,222,294 (0.52)	2,376,937 (1.00)
2006	287,956 (0.77)	83,328 (0.23)	371,284 (1.00)	942,175 (0.46)	1,086,974 (0.54)	2,029,149 (1.00)
평균	315,775 (0.79)	81,759 (0.21)	397,534 (1.00)	1,087,695 (0.48)	1,168,830 (0.52)	2,256,525 (1.00)

주: ( ) 안은 비율임.

자료: 日本 国税庁, 『統計年報』, 각 연도

3. 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시사점

이상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창업자금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데 반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부의 재분배와 상속세의 보완이라는 증여세의 종전의 기능 대신에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른 소비의 진작을 위해서 상속세법에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하여 20%의 단일비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종전에 비하여 증여세의 부담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자는 그 해 1월 1일 현재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증여를 하는 자는 증여를 하는 때에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 연령의 조정을 할 때에 일본의 제도를 참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10%의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500만엔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고 있다.

증여공제와 세율면을 살펴보면 양쪽 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증여공제의 경우에는 일본은 2,500만엔을 한도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고 있으며, 세율구조에 있어서도 일본의 경우에는 20%의 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의 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도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고 할 것이다. 전체적인 세율구조를 놓고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속세의 과세형태를 유산과세형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도 전체 유산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취득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증여받은 재산과 특정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다. 즉, 상속시 정산과세의 경우 일본은 취득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받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채택한 자 이외의 자가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섯째,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선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세액에서 그 증여세에 상당하는 부분을 공제하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환급을 해주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Ⅲ.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합리적인 정착방안

1.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합리적인 정착방안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일제시대인 1934년에 유산세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창설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의 국세법전 제정 당시에는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은 각각 별개의 법률로 제정되었지만, 1952년 11월 30일 법률 제261호의 개정으로 증여세법이 폐지되고 상속세법으로 통합되는 등 그 동안 17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을 통하여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 등 경제·사회적 기초에 많은 변동이 있어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로 법령의 명칭을 상속세법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바꾸고 그 체제 및 내용의 전면적인 개편을 이루게 되었다[40].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 때에는 증여세를 무리하게 강화하였다. 즉, 최근 우리나라는 부의 세습을 억제하여 부의 불균등 분배를 시정하기 위해서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등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자본의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의 해외이전을 조장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상속세보다 중과세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증여를 상속의 경우보다 중과세할 경우에는 부의 동결효과가 발생하여 노년세대에서 경제활동이 왕성한 젊은 세대로 자산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현재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반시장적인 제도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관한 일반규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도입하여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가 본래 추구하였던 부의 세습과 집중의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상속시 정산과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상속시 정산과세적용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인 추정상속인이어야 하며, 연령은 수증자는 23세 이상으로 하고, 증여자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가액과 5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셋째,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자가 특정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분의 증여세 금액은 특정 증여자별로 계산된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각각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한다

넷째,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한 재산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선택

40)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8, p.738.

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되, 이 경우 종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이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생전에 어느 1인에게 모두 증여한 경우에도 다른 자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유산과세형은 취득과세형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루고자 한다.

2.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연령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현실성이 없는 규정으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학구열이 강하여 대학 진학률이 84%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창업자금 등을 증여받는 자들은 대부분 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규정은 수증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18세에서 23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증여자의 경우에도 현재의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로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서도 연령을 23세 이상과 6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금액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서 창업자금의 한도를 30억원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금액기준을 둔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기본적으로 수증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층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때에 현행 규정은 그 합리성을 찾기가 힘들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인데, 중소기업의 기준은 종업원 수와 자기자본,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창업단계에 있어서 매출액은 그 기준을 삼기 어려우므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데, 현재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30억원의 한도는 이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당장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때에는 100억원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창업단계에서 증여세는 비록 10%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지만, 나중에 상속시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세수의 결함은 없고, 단지 세금의 납부를 이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실질적인 창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금액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제외대상 재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토지와 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일정한 주식 및 영업권 등은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산을 제외한 이유는 창업자금을 통하여 수증자가 일정한 사업을 창업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자산을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창업을 억제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년층의 경우에는 현금보다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을 제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년층이 이러한 자산을 양도한 후에 현금으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의 이전이 제때 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들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을 창업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수증자인 자녀들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창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창업기간 및 창업자금 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규정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당해 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창업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왜냐하면, 창업기간은 당해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단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업종도 있고, 장기간 창업을 준비하여야 하는 업종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당해 업종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업종에 따라 창업기간을 달리 정하여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 세액공제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창업자금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당연히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기납부한 증여세가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도입하게 되면, 현재의 제도와 여러 가지 면에서 상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즉,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에 대하여도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러한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과세는 기본적으로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을 받은 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비록 상속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배우자가 생존에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는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공제의 최소금액인 5억원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는 부당한 공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증여공제액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3,0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제는 생전의 증여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창업자금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공제제도와 연계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고율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의 구조하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합리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과세유형, 증여공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공제 및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구조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과세유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학자들 사이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완화뿐만 아니라 당해 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란이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폐지론자의 입장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중소사업체와 가족농장이 파탄하며, 과소비 행태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거액의 납세순응비용을 발생시키며, 교묘한 조세회피 방법을 만연하게 되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고 당해 제도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41]. 또한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국가 간 자본의 이동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폐쇄경제 시절에나 통하던 정책수단을 고수하게 되면 자본의 유출 등에 의한 성장의 둔화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고용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성장의 둔화와 고용의 위축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의 근로자들에세 가장 현저한 피해를 끼치므로 부의 세습을 줄여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완화하려는 상속세는 부의 직중억제 효과는 미미하고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고통을 안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42].

41) 상속과세의 폐지에 대한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최명근, 『상속과세 존폐론』, 경제법륜사, 2007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와 같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폐지에 관한 주장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그런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폐지한 나라의 경우에는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완전히 자리잡은 나라의 경우이다. 즉,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부 주식 및 기타자산 등 일부 자산의 양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부연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고액의 자산가들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길을 열어놓게 되어 과세의 형평이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의 현실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주요 국가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도 상속과세를 가급적 강화하여 그 부담을 무겁게 하여야 한다는 국민정서와 논리가 팽배해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부의 축적과정에 선진 자본주의 사회보다 투명성이 부족했고 부의 축적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역사가 우리보다 장구하고 축적된 民富의 규모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며, 부의 계층간 분포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왜곡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자본의 선진국들이 상속과세 정책에 대해 회의를 크게 품고 그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회의와 개선이 바로 상속과세의 폐지론 또는 완화론이고, 캐나다·호주·뉴질랜드·이탈리아·스웨덴 등은 이미 상속과세제도를 폐지했고, 미국은 2001년 5월 26일에 공포한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상속과세제도 중 유산세를 폐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상속과세 강화 일변도의 정책은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43].

또한,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소득과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취득할 때에 그 원천에 대하여 이미 소득세 등을 과세한 후에 축적된 재산에 대하여 무상이전될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즉, 상속과세가 소득과세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중과세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축에 저해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폐지론자의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부연하면, 부의 집중억제 내지 출발점의 균등화라고 하는 추상적 목적에 너무 기울어져서 과중한 상속과세의 부담을 지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거기에다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다하게 부의 무상이전을 의제하는 법제도에 의해 상속과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더더욱 피해야 한다. 의제에 의한 상속과세는 상당한 부분이 가공의 담세력에 세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속과세를 보다 단순·명료화하고 무리한 무상이전의 의제를 없애면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44].

이하에서는 현행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유산과세형의 문제점과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42) 최광,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8.9, p.135.
43) 최명근, 『상속과세 존폐론』, 경제법륜사, 2007, pp.100~101.
44) 최명근, 『상속과세 존폐론』, 경제법륜사, 2007, pp.102~103.

(1) 유산과세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우리나라의 상속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남겨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에는 과세상 편의를 위해서 증여자 기준이 아닌 수증자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유산과세형은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되고, 부의 분산능력이 거의 없으며, 상속공제의 효과가 공제사유가 없는 상속인들에게까지 그 경감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제대상인 상속인에게는 그 혜택이 미미하게 돌아가는 모순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45].

(2)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유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와의 조화를 위해서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체계나 제도를 정비할 부분이 많으며, 조세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아직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양과 달리 개인주의보다는 아직도 가족집단주의가 지배적인 문화풍토 속에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은 국가의 세수감소 예상은 물론, 탈세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풍토하에서 부의 세습화 차단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으며, 유산취득자 각각의 상속재산 규모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세무행정의 복잡성으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한다. 납세자의 경우에도 탈세가 보편화되어 있는 풍토 속에서 세부담의 공평성 향상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득과세형보다는 현제와 같이 유산과세형이 더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다[46].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타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상속과세의 유형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조세행정은 과세유형을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조세행정 내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유형은 유산과세형이지만, 조세수입의 증대와 조세행정상의 편의 등을 이유로 현행 상속세체계는 유산과세형을, 증여세체계는 취득과세형을 취하고 있다. 즉,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전이전의 누적합산도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증여세의 상속에 대한 보완기능이 반감하는 것이므로 이는 입법상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상속세의 본래의 목적인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취득과세형은 상속인 등 각자가 무상취득한 재산가액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여 이전하면 할수록 상속세 부담의 총액이 유

45) 유산과세형의 문제점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최명근·조경엽,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 한국경제연구원, 2006, pp.62~64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46) 유경문,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세제개혁』,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위원회, 2008, p.294.

산과세형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부의 분산을 유도한다.
넷째,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현재의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경우에는 증여 당시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비례세율로 과세하는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상속시에 당해 가액이 전체 유산총액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 증여공제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서 세율구조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서 동일하지만, 공제액의 차이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상속세보다 중과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공제의 경우 상속세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30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고 있는 데 반하여, 증여세에 있어서는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6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여세를 사실상 상속세의 경우보다 중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의 동결효과가 발생하여 젊은 세대가 조기에 부모 등의 유산을 승계받아 활력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증여세의 상속세에 비한 상대적인 중과세는 시정하여 젊은층으로의 재산의 이전을 유도하여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최소한 증여세를 상속세보다 중과세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는데, 증여세의 중과세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증여공제를 현재보다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배우자 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준금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과 30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또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47]. 이와 같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전액을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의 기간 동안 6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48].
이하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배우자공제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논외로 하고, 증여의 경우로 한정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증여세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제한적인 재산가액공제방법을 채택하게 되면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와 비교하여 극심한 세부담의 불공평을 야기하게 된다. 왜냐하면, 과거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였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증여세

4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4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과 부부간의 증여를 달리 취급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이다[49].

결과적으로 현재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으로 인한 경우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첫 번째 방법이고, 차선책으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의 방법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영국 또는 미국 등의 경우처럼 1세대 1회 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배우자간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즉, 상속세에서 배우자간 재산상속에 대하여는 면세하거나 배우자공제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에는 잠재적 고유지분의 청산 등으로 보아 증여세의 부담도 역시 지우지 않는 것이다. 부연하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하여 그 일방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을 그 타방에게 이전함에 있어서 혼인 중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질이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무릇 동일세대의 경제적·사회적 공동체인 배우자의 공동재산에 대한 잠재적 지분의 현재화에 따른 재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로 인한 경우에도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0].

둘째, 혼인의 기간에 따라서 공제액에 차등을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의 경우 그 한도를 30억원으로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혼인 후 30년 가량 동거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약 1억원 정도로 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공제의 경우에는 혼인한 기간에 따라서 1년에 1억원씩 공제액을 인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결혼 후 형성한 자산의 경우에는 공동소유로 추정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보아 배우자공제의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의 1/2의 범위 안에서는 증여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일방의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와 공동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 위해서도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의

---

49)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이혼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할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와 진정한 재산분할을 가리려는 입법적 노력 없이 반증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입법목적과 그 수단간의 적정한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며 비민주적 조세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며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주된 입법목적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과세상 형평을 유지한다는 데 있다고 하나, 이혼과 배우자의 사망은 비록 혼인관계의 종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관계, 신분관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증여세의 상속세 보완세적 기능을 관철하는 데에만 집착한 나머지 배우자상속과 이혼시 재산분할의 재산관계의 본질적이고도 다양한 차이점을 무시하고 이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다룸으로써 자신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받는 혼인당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1997.10.30선고, 96헌바14결정).

50) 同旨; 안천식, 「이혼에 따른 과세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8.2, p.77.

50%의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자녀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공제하되,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인 1,5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1].
현재 3,000만원의 증여공제는 과거 10년동안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제액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공제액은 일정액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가 문제인데,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1인당 2억원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억원이라는 금액은 증여의 누적합산기간인 10년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므로, 연간 2,000만원 정도를 공제받은 것이다.

(3) 친족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서 5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2]. 이러한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직계존비속 외의 친족간의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위장증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핵가족화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직계존비속 이외에는 증여세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위장증여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공제액인 500만원에서 이를 3,0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가업승계 관련 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내용

현재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영농상속공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내용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53].
㉠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중에서 큰 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

5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5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5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영농(양축·양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상속의 경우에는 당해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가업상속과 영농상속의 범위

㉠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이란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상속을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가업에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5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54].

㉮ 피상속인은 가업의 영위기간 중에서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로 재직한 경우

㉯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위 ⓐ 및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 영농상속의 범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양축·양어·영림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가운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받은 것을 말한다[55].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 등에 종사하는 자

㉯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2)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도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과 영농상속금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경영권의 승계가 조세문제 때문에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액은 그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가업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로 하되, 30억원

5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5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을 한도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피상속인의 기업 영위기간과 상속공제액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평균연령은 약 1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영위기간을 최소한 평균치 또는 그 이하로 인하하여 기업의 승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즉, 피상속인의 사업의 영위기간은 현재의 15년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공제액에 있어서 2억원까지는 전액을 공제하고, 최고 한도를 3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금액이 현실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가업상속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10억원까지는 전액을 공제하고, 가업상속재산의 50%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해 가업재산의 경우에는 이미 소득의 획득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최고한계세율에 의한 법인세 또는 법인세 등을 납부한 후의 재산인데, 이러한 재산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면 소득과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권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재산의 50% 정도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현재 최고 한도를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도액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앞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공제제도는 실질적으로 소득과세(소득세 또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에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② 영농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영농상속공제의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2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한미 FTA와 그 이외 국가들과의 FTA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현재의 영세한 영농업자들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농을 살릴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동상속공제의 한도액을 현행의 2억원에서 10억원 정도로 확대함으로써 농업이 기업농으로 성장 발전하여 외국과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주요 국가의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의 비교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은 크게 양 세율이 동일한 경우와 소득세율이 상속세율보다 더 높은 경우 및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더 높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로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1>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

상속세율=소득세율 (2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15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5개국)
·영 국(40%) ·프랑스(40%)	·독 일(30%) ·터 키(30%) ·벨기에(30%) ·아일랜드(5%) ·네덜란드(27%)등	·한 국(50%) ·일 본(50%) ·미 국(45%, '08년) ·덴마크(36.25%) ·스페인(34%)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8.9.1)

위의 표에 나타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이다, 즉, 호주·캐나다 및 포르투갈 등 6개 국가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세도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경우에는 2008년 현재 상속세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동일하다. 그리고, 독일, 터키, 벨기에, 아일랜드 및 네덜란드 등 15개 국가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더 낮게 설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 일본, 미국, 덴마크 및 스페인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더 높게 설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미국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며, 일본의 경우에는 최고세율을 50%로 설정하고 있지만,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감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덴마크와 스페인의 경우에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지만, 그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과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2) 세율구조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구조는 최소 10%에서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최고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율의 세율구조가 타당한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왜냐하면, 앞의 상속시 정산과세의 경우에도 나중에 고율의 상속세가 부과되면, 그 효과에 있어서 반감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부의 집중억제를 통한 경제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속과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경제의 기본질서를 삼고 있는 국가의 경우 상속과세의 강화를 통해서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이나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상속과세 자체를 폐지하거나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같은 소득과세의 적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과 소득세 또는 법인세제도 자체의 적정한 정비에는 게을리하면서 상속과세의 강화만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과세대상은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고율의 세율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조세의 기

본원리인 평등과세의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상속과세에 있어서 포괄주의의 도입과 증여의 추정 등 우리나라 상속과세 자체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하여 납세자들의 납세순응비용의 증가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세율구조로 인하여 특히 중산계층의 세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과도한 세부담은 자본과 고급인력 같은 중요한 생산요소의 이동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산요소득의 국내형성, 즉 인적자본의 투자나 저축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장잠재력 확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적인 목적은 부의 집중 억제와, 부의 재분배에 있는데, 부의 집중을 억제하는 문제는 부의 축적이나 보유에 관한 문제이지, 부의 무상이전에 관계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부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의 축적과정에서 누진세율에 의한 소득세를 과세하거나, 부의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부유세를 통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원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를 통하여 소득의 획득단계에서 과세하지 못한 부분을 정산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는 세무행정의 개선을 통하여 당해 소득의 획득단계에서 정확하게 세원을 포착하여 과세하여야 할 과세이지, 이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를 통하여 이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세율구조의 개선방안

이와 같이 현재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고세율구조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일정한 수준까지 인하하여야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인하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미국과 영국 및 독일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율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장과감세조정법에 의하여 2009년까지 상속세과세를 지속적으로 폐지하여 2010년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증여세는 존치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존치되는 증여세의 세율은 개인소득세 최고 명목세율인 35%로 한다. 그러나, 2011년에는 EGTRRA 제901조의 규정에 의해 개정된 유산세의 각종 경감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2001년 당시의 종전 법규의 효력을 되찾게 된다. 즉,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인하하는 것이다.
한편, 2001년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합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최저 18%에서 최고 5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그 후 2002년에는 최고세율을 50%, 2003년에는 49%, 2004년에는 48%, 2005년에는 47%, 2006년에는 46%이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45%이다[56]. 둘째, 영국의 경우에는 상속세는 40%의 비례세율로 규정하면서도 증여세의 세율은 그 절반수준인 20%의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셋째, 독일의 경우에는 상속과세의 기본세율이 17% ~ 50%인데, 배우자 또는 자녀가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세율을 7% ~ 30%로 낮추어 적용하고 있다. 즉, 독일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의 친소에 따라서 세율구조를 달리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하여, 상속세의 기본적인 의미가 기회균등이라는 가치 실현이라는 점과 상속세는 소

56) 박민, 「미국의 상속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Ⅸ-2, 한국세법연구회, 2003.11, p.235

득세에 비해서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고액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57].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찬성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는 생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을 찾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율의 세율로 부과하면 안되며, 직계비속 등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부양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상속세의 세율을 자본소득세의 세율 수준으로 인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58].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자본이득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은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세율구조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재의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보다 더 높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현재의 50%에서 과감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명목적인 최고한계세율인 50%는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데 반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한계세율은 오히려 인상하여 그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주식의 평가시에 10% ~ 30%의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한계세율은 현재보다 더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고율의 세율로 가족에 대한 경영권의 상속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선택을 왜곡하는 조치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과도한 배당 등을 통해 사내유보를 억제하고 인위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경영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한계세율을 최소한 소득세의 최고 수준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59]. 그러나, 소득세의 최고세율 수준으로 낮추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와의 이중과세의 문제 때문에 그 부담액이 너무 과중함을 부정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앞의 주요 국가의 상속세의 최고세율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총 22개 국가들 중에서 15개 국가가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는 현재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세의 부담을 적게 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하여 징세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세율이 낮을수록 탈세의 확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세행정의 필요조건이 된다. 즉, 세율을 낮추게 되면 탈세의 확률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징세비용을 줄이게 되어 효율적인 조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하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

57) 최승필,「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기업 상속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공법연』제36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8.6, p.275.
58) 최명근·조경엽,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 한국경제연구원, 2006, p.16.
59) 同旨; 곽태원, 『한국 조세정책의 주요 문제와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07, p.81.

있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이 높은 누진도에 의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오히려 탈세 또는 조세회피 등을 통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부담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세율을 일정부분 인하할 경우에는 탈세 또는 조세회피행위가 감소하기 때문에 세수 측면에서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Ⅳ.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제도는 1950년부터 두고 있는데, 당시에 당해 세제의 목적은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보다는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데에 있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러한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그러나, 당해 세제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내외로 당초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은 저축을 감소시키고, 국부의 국외유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를 많이 소유한 계층이 국적을 상속과세가 없거나 낮은 나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세법의 정확하고 공평한 집행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실제 상속세의 부담률이 사안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사회적인 신뢰와 통합에 오히려 부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속세보다 증여세의 과세를 중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자녀들에 대한 재산의 이전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가 기존의 목적인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면, 당해 세제는 근본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이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착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정착을 위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대한 일반규정을 일본의 경우와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규정들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령규정에 있어서 현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23세 이상과 65세 이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금액기준에 있어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서 창업자금의 한도를 30억원으로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100억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산을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창업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들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을 창업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수증자인 자녀들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창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당해 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업종에 따라 창업기간을 달리 정하여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에 있어서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산과세형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선택한 경우에 실질적인 혜택이 다른 자에게 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증여공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배우자공제의 경우에는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6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의 규정은 이혼시의 재산분할과 상속시 상속공제 등에 비추어 보아 형평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그 전액을 공제하거나, 혼인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법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의 1/2의 범위 안에서 증여되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1인당 2억원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친족공제의 경우에는 현재의 공제액인 500만원에서 이를 3,0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가업상속공제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사업의 영위기간은 현재의 15년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업상속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10억원까지는 전액을 공제하고, 가업상속재산가액의 50%를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한도액은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영농상속공제의 경우에는 한도액을 현행의 2억원에서 10억원 정도로 확대함으로써 농업이 기업농으로 성장 발전하여 외국과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5단계 최과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재의 세율구조는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선진국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고율의 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추세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부담은 저축의 형성을 저해하여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한계세율구조는 소득세의 최고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태원, 「조세의 시대적 역할과 현 시대의 조세정책방향」,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세제개혁』,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위원회, 2008.

곽태원, 『한국 조세정책의 주요 문제와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07.

곽태원 외 6인,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6.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8.

김성태·유일호, 「세제개편의 기본원칙과 기본 방향」,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세제개혁』,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위원회, 2008.

김진·원종학, 『상속·증여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12.

박민, 「미국의 상속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Ⅸ-2, 한국세법연구회, 2003.11.

배세환,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2.

신상철,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7.12.

안천식, 「이혼에 따른 과세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8.2.

유경문,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세제개혁』,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위원회, 2008.

이영, 「감세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세제개편안의 쟁점과 방향:감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한국조세연구원, 2008.10.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8.

최광,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8.9.

최명근, 『취득과세형 상속과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3.

최명근,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2.3.

최명근, 『상속과세 존폐론』, 경제법륜사, 2007.

최명근·김정식·최봉길, 『상속증여세법 해설』, 경제법륜사, 2007.

최명근·조경엽,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 한국경제연구원, 2006.

최승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기업 상속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6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8.6, pp.259-282.

한상국·배준호·이광재, 『상속·증여세제의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6.12.

橋本 守次, 『相續稅法』, 大藏財務協會, 2007.

金子宏,『租稅法 第11版』, 弘文堂. 2006.

日本公認会計士協会, 「相続・贈与に係る税制について―相続税と贈与税の一体化の方向性について」, 『租税調査会研究報告』第13号, 2004,12.

日本 税制調査会, 「あるべき税制の構築に向けた基本方針」, 2002.6.

中牟田智朗,「相続税と贈与税の一体化について : 相続時精算課税制度とシャウプ税制の比較研究」,『近畿大学九州工学部研究報告』第32号, 2004.